

달라진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처리시설축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2월 9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한명숙

법률 제 7169 호

폐기물처리시설축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

폐기물처리시설축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

제4조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제6조중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도시지역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및 당해 시설은 각각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결정 또는 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결정·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및 고시·공고 가 있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8호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로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동법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제17조제2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를 “제17조의2의 규정에”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구성기준 및 결격사유) ①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의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의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중 “3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특례)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988년 1월 1일 당시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이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도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과 관련하여 구성·운영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과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고시 제2003-219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도 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총량 (단위: 톤)

| 품목 | 2002년 총출고량 | 2004년 의무총량(%) | 2003년 의무총량 | |
|-------------|-------------------|------------------|--------------------------|----------------|
| 금속캔 | 235,250 | 172,000(73.1) | 180,000 | |
| 유리병 | 504,827 | 313,284(62.1) | 298,798 | |
| 종이팩 | 70,448 | 20,730(29.4) | 15,500 | |
| 합성수지 포장재 |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 114,660 | 83,114(72.5) | 71,800 |
| | 발포폴리스티렌 | 19,615 | 11,063(56.4) | 10,100 |
| | 폴리스티렌페이퍼 | 12,680 | 2,585(20.4) | 2,000 |
| | 폴리비닐클로라이드 | 3,969 | 1,878(47.3) | |
| | 기타 합성수지 | | | 80,715 |
| | 단일재질 | 146,133 | 70,614(48.3) | |
| | 복합재질 | 73,602 | 20,726(28.2) | |
| | 윤활유 | 226,963kl | 161,525kl(71.2) | 140,400kl |
| | 타이어 | 286,251 | 192,917(67.4) | 184,000 |
| | 형광등 | 145,437천개 | 22,070천개(15.2) | |
| 전자류 | 산화은전지 | 1,391kg | 1,252kg(90.0) | 2,056kg |
| | 리튬전지 | 255,063kg | 74,174kg(29.1) | 33,205kg |
| | 니켈·카드뮴전지 | 627,766kg | 145,276kg(23.1) | 26,880kg |
| 전자제품 | 텔레비전 | 105,223 | 9,728(9.2) | 8,481 |
| | 냉장고 | 241,248 | 26,155(10.8) | 19,100 |
| | 세탁기 | 70,481 | 15,362(21.8) | 13,700 |
| | 에어컨디셔너 | 105,227 | 687(0.7) | 600 |
| | 개인용본체 및 자판 컴퓨터 | 29,925 48,178 | 1,854(6.2) 2,338(4.9) | 1,300 1,300 |

환경부고시 제2004-35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2003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03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

개정 환경부고시 제2002-105호 (2002. 7. 3)
개정 환경부고시 제2004-10호 (2004. 1.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려금제”라 함은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신기술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공불제”라 함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소유자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제 및 성공불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제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규정 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적용한다.

③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공불제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을 적용한다.

제2장 신기술 장려금제

제4조(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①장려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시설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환경시설로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5.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②장려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은 다음 각호의 기술로서 관계법령이 정한 유효기간(보호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제 대상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환경신기술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
3.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고시한 신기술중 환경분야의 기술
4.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인증·고시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

제5조(사업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기술을 사용하여 장려금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 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해당 환경시설에 적합한 신기술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의 검증 및 평가)

①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후 성능 또는 효율과 유지관리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검증과 중복되는 검증·평가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 검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완료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결과를 환경기술검증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적용된 신기술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지의 여부 및 현장적용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시운전을 실시하여 당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되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는 9월 이상
2.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제외한다), 재활용시설, 취·정수시설의 경우에는 6월 이상

③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환경시설에 적용된 기술이 이미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인 경우에는 환경기술평가의 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당해 기술검증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장려금 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고 설치된 환경시설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보조한 기관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여부
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달성 여부
3. 사업계획 공모 또는 환경시설 설계도서에 제시된 성능 또는 효율 등 달성 여부
4.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가 제9조의 예산절약의 기준 충족 여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및 충족요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 심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장려금 지급대상 범위에 속하는 신기술 및 대상사업인지의 여부
2. 준공 후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의 여부
3.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적정한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상청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8>

1. 적용된 신기술이 설치된 환경시설에의 적합성 여부
2.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및 적정금액 산정 여부
3. 제시된 예산 절약액 산출의 적정성 및 적정금액 산정 여부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자문위원회 위원을 선발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8>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를 자문위원회에 출석시켜 신청시설

의 신기술 적용내용, 검증 및 평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8>

제9조(예산절약의 기준)

①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예산절약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설치비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까지 배정된 예산에서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장비 등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액을 감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지관리비는 단위 처리량 당 유지관리비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동일한 종류의 시설로서 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동일한 규모 또는 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규모 또는 용량을 적용한다)을 가진 시설의 평균 유지관리비보다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절약액을 산출함에 있어 용지보상,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일반건축물 건축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배정 및 사용된 예산은 제외하며, 유지관리비는 전력비, 연료비, 상·하수료, 재료·약품비, 부산물처리비, 유지관리인력 소요 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10조(장려금의 규모)

①장려금은 예산절약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산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예산절약에 기여한 신기술이 확대 적용됨으로써 예산절약효과가 현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장려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장려금 지급심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심의결과 장려금 지급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절약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심의결과를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

한 자체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장려금 지급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 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장려금 지급심사 요청에 대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기여도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장려금의 지급)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을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전용할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 예산조치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 종류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예산배정 및 차회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절약액의 전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3장 신기술 성공불제

제14조(성공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①성공불제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시설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양여금(이하 “국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6.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②성공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은 다음 각호의 기술로서 관계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보호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공불제 대상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환경신기술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
3.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고시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
4.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인증·고시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

제15조(사업추진의 기본원칙 등)

성공불제를 적용하는 환경시설의 설치에 민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에서 성공불제를 조건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의 설치 및 신기술의 적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민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①성공불제로 환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설치에 적용할 신기술 분야, 국고지원금 지급시기,

국고지원금 중 성공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 한다)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 제안사업인 경우에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성공불제 사업시행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금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대상사업의 고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민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내용에는 성공불제에 의한 사업시행 및 적용대상 기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여부 확인, 국고지원금 지급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민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부문에서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성공불제로 추진을 계획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도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성공불제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반영하여 성공불제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 설치계획의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시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협약체결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투법 제13조 또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대상자를 지정하며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에 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지정시 당해 환경시설 설치에 적용할 환경기술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성공불제에 의한 사업시행 및 적용대상 기술, 성공여부의 확인, 국고지원금의 지급방법, 시설의 효율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유지 등 성공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당해사업의 시행조건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성공여부의 검증·평가)

①사업시행자는 당해 환경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성능 또는 효율과 유지관리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검증과 중복되는 검증·평가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 검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완료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결과를 환경기술검증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시운전을 실시하여 당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되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는 9월 이상
2.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제외한다), 재활용시설, 취·정수시설의 경우에는 6월 이상

③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환경시설에 적용된 기술이 이미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인 경우에는 환경기술평가의

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당해 기술검증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환경기술평가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성공여부의 심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검증이 완료되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공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환경기술검증결과,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8>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환경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성공판단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8>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자문위원회위원을 선발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8>

제21조(성공여부 평가기준)

성공불제의 성공여부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여부
2.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달성 여부
3.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 제시된 효율 또는 유지관리비의 충족 여부

제22조(시설의 보완)

사업시행자는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여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지급)

①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성공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고지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해야 할 재원부족 등 예산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중 국고지원금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율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리와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이자율중 원칙적으로 낮은 것을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적용신기술의 보급 확대)

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성공불제 적용신기술이 동일 종류의 환경시설에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환경법령에 의한 당해 시설의 기본계획 승인, 시설설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촉구할 수 있다.

제2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장 신기술 성공불제 추진사업의 조기착각 및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지자체와 대형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부칙(2002. 7.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려금제 추진 경과조치) 이 규정 고시 이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환경시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본다.

③(국고지원금이 지원된 시설의 성공불제 추진 경과조치) 이 규정 고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금이 지원되어 집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이 규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공불제를 추진할 수 있다.

부칙(2004. 1. 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공불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성공불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본다.

환경부령 제137호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③제조자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란·메추리알
2.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④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하는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

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자원재생공사
2.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크기·형태 및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중 샴푸·린스류 :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7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 100분의 10

②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 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관련)

| 제품의 종류 | | 기준 | | |
|--------|---|--------------------|------------------------------|-------|
| |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
| 단위제품 |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 | 음료 | 10% 이하 | 1차 이내 |
| | | 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 | | 제과류 | 20% 이하 (테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 2차 이내 |
| | | 건강보조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 화장품류 |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 | 세제류 | 세제류 | 10% 이하 | 2차 이내 |
| | 잡화류 | 양구·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 | | 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 | | 신변잡화류(지갑·허리띠에 한한다) | 30% 이하 | 2차 이내 |
| | 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 | 의류 | 와이셔츠·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 | 25% 이하 | 2차 이내 |

- 비고 : 1. “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라 함은 단위제품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단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날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단위제품으로 종이·골판지·펄프물드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각각의 포장공간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한다.
 - 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포장공간비율에서 5를 뺀 값으로 하며, 종이·골판지·펄프물드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포장공간비율에 5를 더한 값으로 한다.
 -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A 1005-2001)에 의한다.

[별표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제6조관련)**

| | |
|--------|-------------------|
| 포장재질 | 1차(내부) : 2차(외부) : |
| 포장공간비율 | % (기준: % 이하) |
| 포장횟수 | 차 (기준: 차 이내) |

- 비고 :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 또는 내·외부 포장재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명·검사일자 및 검사번호 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3. 위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대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관련)

1. 영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

| 제품의 종류 | 대상 포장재 | 연차별 줄이기 기준 | | |
|--|----------|------------------|------------------|------------------|
| | | 2003년·2004년 | 2005년·2006년 | 2007년 이후 |
|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 난 좌 팩 | 60% 이상 35% 이상 | 70% 이상 40% 이상 | 80% 이상 45% 이상 |
|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 받침접시 | 15%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 다. 매장면적 166㎡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 받침접시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 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 | 용 기 | 20% 이상 | 30% 이상 | 35% 이상 |

- 비고 : 1.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비율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은 당해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은 당해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의 감소율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

| 제품의 종류 | 대상포장재 | 연차별 줄이기 기준 | | |
|---|---------|---|---|---|
| | | 2004년·2005년 | 2006년·2007년 | 2008년 이후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 포장용 완충재 | 포장용적 2만㎤ 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외의 포장용완충재를 사용 | 포장용적 3만㎤ 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외의 포장용완충재를 사용 | 포장용적 4만㎤ 이하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외의 포장용완충재를 사용 |

- 비고 : 제조자들은 포장용적이 당해 연도 줄이기 대상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으로서 10만㎤ 이하인 제품에 대하여 발포폴리스티렌재질의 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